

2003. 11. 20

# 徐大錫委員 書面質問 · 答辯書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행정사무감사)

1. 레지오넬라균 검출관련 예방대책은?

전남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그리고 감염원인과 경로는 어떠하며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레지오넬라균의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2. 전남 관내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대책?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수질이 몇급수 이상 되어야 합니까? 현재 주5일 근무와 낚시 인구의 증가로 농업용 저수지가 목적 외 낚시터나 수상 레포츠 등으로 임대, 저수지의 부영양화가 가속되는 등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 레지오넬라균 검출관련 예방대책

## 레지오넬라균 검출관련 예방대책

### □ 레지오넬라균 검사 현황

- 기 간 : 2003. 6. 1. ~ 9. 30(4개월)
- 총 건 검사 : 121건(관112건, 민9건)
- 검 출 건수 : 88건( $10^2$ 미만-47건 : 바람직한 범위  
 $10^2 \sim 10^3$ -41건 : 살균소독을 적극권고)

### □ 레지오넬라증이란?

- 레지오넬라증의 정의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의한 감염증으로 냉방병의 일종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은  $20 \sim 47^\circ\text{C}$  온도에서 성장하나  $4^\circ\text{C}$  이하나  $65^\circ\text{C}$  이상에서도 생존가능
- 레지오넬라증 감염경로
  -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중호흡치료기기,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상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됨
- 레지오넬라증의 증상
  -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주 증상은 발열, 오한, 마른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쇠약감, 의식장애등을 보임

### □ 예방대책

- 냉각탑 청소 및 소독: 년2~4회
- 소독방법 : 염소처리, 고온살균법, 자외선 조사, 오존처리 등
- 병원내 레지오넬라증 예방 : 의료 종사자들의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은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

## 전남관내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대책

## 전남관내 농업용 수질오염대책

### □ 저수지의 농업용수 기준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 1의 근거로 IV등급수 이상으로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이온 농도(pH)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mg/L)	부유물질량 (SS) (mg/L)	용존산소량 (DO) (mg/L)	총 인 (T-P) (mg/L)	총질소 (T-N) (mg/L)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0.100이하	1.0이하

###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방지대책은

-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는 농림부의 농업기반공사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용수 수질관리지침(2000. 농림부)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질오염에 대한 조치
  - 경미한 수질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몽을 통하여 수질보전 인식을 고취시키고 오염행위 재발 방지.
  - 과실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사고 사안에 따라 지도·계몽과 함께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수질오염행위와 중대한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배출위법시설 폐쇄조치 등).

-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질을 분석하고, 수질이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낚시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치토록 함.
- 농업용 수리시설의 목적외 사용(낚시터, 수상레포츠, 가두리양식장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질을 분석하고,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면허기간의 연장불허 등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농업용수 수질오염개선 대책으로는
  -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은 수원이 오염되었을 경우와 지구 내 용수로가 오염된 경우로 구분하고
  - 처리하는 위치에 따라 발생원 대책, 유입하천 대책, 호소 내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오염특성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